



KERI Insight

빅 블러 시대의 금산분리 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 동향과 시사점

김영주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부교수
(ykim333@pusan.ac.kr)

1. 논의의 배경

□ 금산분리 원칙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핵심 규제 중 하나로서 최근까지 이러한 정책기조가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금산분리는 엄밀하게 은산분리 규제로 크게 소유와 진입, 그리고 행위와 업무 범위로 구분하여 시행됨

- 금산분리 규제는 크게 소유와 진입, 그리고 행위와 업무 범위로 구분되어 이루어짐

- 구체적으로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은 법률상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고, '은행' 역시 비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5%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음

- 이처럼 금산분리 규제는 ① 은행에 의한 산업자본 소유와 ②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 소유라는 측면에서 양방향 규제 체계를 취하고 있음

□ 그러나 금산분리 원칙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금융 자본과 산업자본의 융합을 허용하고 있음

○ 일본은 은행에 의한 산업자본 소유만을 제한하고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는 별다른 규제가 없음

○ 양방향 금산분리 정책을 취하는 금융 선진국으로는 미국이 유일하나, 우리나라에 비해 완화된 금산분리 규제를 채택

-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대해 5%까지는 허용하고, 5% 이상부터 25%까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FRB)가 그 허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전 세계적인 금융 생태계는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의 확산에 따라 전통적인 은행의 업무범위 규제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

○ 특히,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이른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사회 전반에 침투하면서, 금융 환경이 큰 폭으로 변화

- 현재 DX 확산은 은행업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사회 공통현상이라 할 수 있음¹⁾
 - DX는 비금융 분야에서 먼저 시작기는 하였으나, Covid-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거래 요구가 높아지면서 금융 분야에서도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며, DX 확산으로 인해 가장 큰 변화를 겪는 분야는 바로 금융 분야라 할 수 있음
 - 오늘날의 사회적·경제적 배경의 변화는 금융정책의 수정, 특히 금산분리규제가 가진 문제점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우리나라 현행 법률상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은행은 법률상 비금융업 수행이 불가능
 -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 확대와 핀테크 투자가이드라인의 도입 등으로 일부 비금융업무가 수행 가능하나, 제조·유통·통신과 같은 일반적인 비금융 분야는 사업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임
 - 반면에 빅테크 기업들은 은행을 포함한 금융업에 자유로운 진출이 가능
 - 전자금융법 제정과 오픈 बैं킹의 시행 등으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보다 가속화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산분리 완화 방침하에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²⁾
- 본 보고서는 금융업 규제와 관련하여 금산분리 규제가 가진 현실적 위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 우리나라 금산분리 규제 체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금산분리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금산분리 체계와 규제완화에 관한 입법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이를 통해 현행 금산분리 규제의 시대적·국제적 적합성을 파악해 보고, 우리 법제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보고서에서는 우리법상의 금산분리 규제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고 주요국의 입법 동향을 고려하여 금산분리 규제의 완화 방향을 제시함

1) 經濟産業省, “DXを促進するためのデジタルガバナンスに関する調査研究とりまとめ報告書”, 經濟産業省, 2020, p.3

2) 금융위원회,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및「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보고·논의”, 금융위원회 2022. 11. 16.자 보도자료 참조

II. 미국의 금융업 규제와 금산분리

1. 금융업 규제 일반

□ 미국의 금융업 규제는 연방법에 의한 규제와 주법에 의한 규제로 구분되는 이원적 규제를 이룸

○ 금융 관련 연방법률은 주로 ‘대통령 금융시장 워킹그룹’, 미국 상원의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와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 등에서 심의

- 상원의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는 경제정책분과회와 증권·보험·투자분과회 등으로 세분되어 있고,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자본시장분과회, 금융기관분과회, 금융정책분과회 등 3개의 분과회로 세분

○ 금융업 규제에 관한 대표적인 연방법으로 연방은행법(National Bank Act),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 은행법(Banking Act of 1933), 증권거래소법(Security Exchange Act of 1934),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투자자문법(Investment Advisor Act of 1940),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ies Act, 이하 BHCA), 금융기관개혁갱생제재법(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 of 1989, 이하 FIRREA), 금융서비스현대화법(Gramm-Leach-Bliley Act, 이하 GLBA), 금융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이하 도드-프랭크법) 등이 있음

○ 연방법에 근거한 금융기관의 감독은 연방금융감독기관들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이하 FRB),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이하 FDIC),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이하 OC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이하

CFTC), 신용조합감독청(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이하 NCUA)이 담당하고, 주법에 근거한 금융기관의 감독은 각 주정부의 감독기관이 담당

○ 그 밖에 증권회사 감독은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 보험사 감독은 각 주의 보험감독국이 담당

□ 미국법상 ‘예금취급금융기관’(상업은행, 저축금융기관, 신용조합)은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각각 은행면허를 교부하고 관리·감독하는 이원적 은행시스템(dual banking system)에 기반

○ 은행은 연방정부가 인가한 ‘연방인가은행’(national banks)과 주정부가 인가한 ‘주인가은행’(state banks)으로 구분³⁾

- 연방인가은행의 인가권은 ‘연방은행법’(National Bank Act)상 재무부 산하의 별도 기구인 OCC가 갖고 있으며, 주인가은행의 인가권은 각 주정부가 가지고 있음

- 연방인가은행은 연방법에 따라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이하 FRS)와 예금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주인가은행은 각 주법의 규정에 따르지만, FRS에 가입한 경우 예금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음

- 2010년 도드-프랭크법 제정 이전, 저축금융기관의 주요 감독 당국은 저축금융기관감독청(Office of Thrift Supervision, 이하 ‘OTS’)였으나, 도드프랭크법 제정 이후 OTS는 폐지되고 OCC로 통합되었고, 연방저축금융기관에 관한 저축금융기관감독청의 감독업무는 모두 OCC 하에서 일원화되게 되었음

○ 연방인가 저축금융기관은 예금보험 가입 의무가 있고 OCC가 면허 부여 권한 및 일차적 감독 권한을 가지나, 주인가 저축금융기관은 예금보험 가입은 임의이며 주정부 감독기관이 면허 부

3) National banks를 국법은행, National Bank Acts를 ‘국법은행법’, state banks를 주법은행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여 권한에 대한 일차적 감독 권한을 가짐. 지주 회사에 대해서는 FRB가 면허 부여 권한과 감독 권한을 가짐

- 연방인가 신용조합은 예금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NCUA가 면허 부여 권한 및 일차적 감독 권한을 가지나, 주인가 신용조합은 예금보험 가입은 임의이며 주정부 감독기관이 면허 부여 권한에 대한 일차적 감독 권한을 가짐

□ 이원적 금융규제와 함께 연방금융감독기관들이 복수 존재하는 제도 하에서는 핀테크(Fintech)와 같은 새로운 금융서비스 산업에 대한 금융규제 체계가 매우 복잡함

- 다만, 최근에는 디지털뱅크(digital bank), 인슈어테크(insurtech), 암호자산 등에 관한 새로운 규율체계가 연방법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음

- 디지털뱅크: 2018년 OCC가 Fintech 기업을 연방인가은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특수목적은행면허(SPNB면허) 부여 개시를 발표한 바 있음. 그에 따라 상당수 핀테크 기업들은 기존 은행과 제휴함으로써 금융서비스를 제공

- 인슈어테크: 일부 주에서 인슈어테크 등이 활용 가능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움직임이 있음. 보험 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의 이용·활용 증가에 따라 2020년에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NAIC)가 AI 원칙을 채택한 바 있음

- 암호자산 관련: 2021년 11월 대통령 직속 금융시장 워킹그룹 및 FDIC의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Stablecoins)⁴⁾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관리·중개사업자에 대한 연방정부 감시 의무화와 관련한 검토 결과가 공표되었음. 연방정부 체계상 SEC나 CFTC 간 연계 또는 권한

구분이 진행되지 않아 규칙 제정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2023년 2월, SEC는 암호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사 보유 자산과 고객자산의 분리 관리를 감시하도록 하는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칙안을 공표한 바 있음

4)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36/StableCoinReport_Nov1_508.pdf> (2023. 7. 23. 최종검색)

〈표 1〉 미국법상 금융기관의 면허 부여권한과 감독권

		가맹·가입 유무		연방금융감독기관					주 감독 기관
		FRS	예금보험	FRB	OCC	FDIC	NCUA	SEC	
은행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	-	면허부여					
은행	연방인가 은행	○ (강제)	○ (강제)		면허부여	연방예금 공여자로서 검사권한			
	주인가 은행	○ (임의)	○ (강제)	일차적 감독권한		연방예금 공여자로서 검사권한		금융소비자관련 감독권한	면허부여
		×	○ (임의)					금융소비자관련 감독권한	면허부여
		×	×					금융소비자관련 감독권한	
저축 금융 기관	저축금융기관 지주회사	-	-	면허부여					
	연방인가 저축금융기관	-	○ (강제)		면허부여	연방예금 공여자로서 검사권한		금융소비자관련 감독권한	
	주인가 저축금융기관	-	○ (임의)			연방예금 공여자로서 검사권한		금융소비자관련 감독권한	면허부여
				×				금융소비자관련 감독권한	면허부여
신용 조합	연방인가 신용조합	-					면허부여	금융소비자관련 감독권한	
	주인가 신용조합	-						금융소비자관련 감독권한	면허부여
									금융소비자관련 감독권한
증권회사		-						면허부여	
보험회사		-							면허부여

자료: European Parliament, Overview and Structure of Financial Supervision and Regulation in the US, EU, 2015, p.49 & 株式会社 エヌ・ティ・ティ・データ経営研究所, 諸外国における金融制度の概要に関する調査, 2023, p.17

2. 금산분리 규제 체계

□ 미국법상 ‘은행에 의한 산업자본 소유 규제’는 1933년 은행법(Banking Act of 1933)에 의해 도입되었고, 2010년 도드-프랭크법에 의해 은행-산업의 분리 원칙(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이 유지되고 있음

○ 은행의 산업자본 소유 금지원칙은 1933년 은행법상 4개 항목을 가리키는 글래스-스티걸법 (Glass-Steagall Act)에 의해 은행의 일반 사업회사 소유에 관한 제한 규정이 명문화되었음

- 미국의 금산분리 정책은 18세기부터 시작되는데, 1787년 첫 번째 주인가은행으로서 필라델피아주가 인가한 북미은행(Bank of North America)과 1791년 및 1816년 연방의회가 인가한 제1미국은행 및 제2미국은행은 상사 관련 업무를 영위할 수 없었음
- 1864년의 연방은행법(National Bank Act of 1864)⁵⁾에서도 은행의 상사업무 영위가 금지되고 있었으나, 1930년대 대공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은행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하여 증권 매매나 인수 업무 등 투자 은행(investment banking) 업

5) 12 U.S.C.A. Chap. 2. National Banks

무를 영위할 수 있었음

- 그러나 1930년대 초반, Caldwell and Company, 미국은행(Bank of United States), 디트로이트은행 그룹의 파산과 함께 대공황 시기 발생한 수많은 은행들의 연쇄파산을 통해, 위험성 높은 투자은행 업무 겸영을 금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제기됨
 - 결국 1933년 은행법에서는 은행업무의 범위와 제휴를 제한하는 이른바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이 도입되어, 연방은행 및 FRS 회원주인가은행들은 비은행 회사들에 대한 주식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시작
 - 글래스-스티걸법은 은행이 증권 증개업이나 국공채의 인수 또는 매매 업무 등의 제한적인 증권업무는 허용하여 투자은행업무에 대한 전면적 금지 정책을 취하지는 않았음
 - 한편, 1933년 은행법에 의해, 연방준비제도 회원은행들과 제휴회사 간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 제23A조가 추가됨⁶⁾
 - 1987년에는 연방준비법 제23B조가 추가되어 제휴회사 간 금융거래도 제한됨
- 1980년대 저축대부조합들의 위기를 배경으로 1989년 FIRREA 제정
- FIRREA에 따라 저축대부조합은 ① 연방준비법 제23A조와 제23B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② 정크본드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었고, ③ 은행지주회사의 제휴회사가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영위할 경우, 해당 제휴회사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게 되었으며, ④ 주 인가를 받은 저축대부조합은 주식투자가 금지됨⁷⁾
 - 1980년대 말 일련의 은행파산 이후, 주인가 은행에 대해서도 FIRREA와 유사한 제한이 가해짐⁸⁾

-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월가의 적극적인 로비와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1999년의 금융서비스현대화법(GLBA)이 제정되면서 글래스-스티걸법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고, 상업은행의 투자은행 겸영이 허용됨
- 1999년 GLBA가 제정되기 이전에도 은행은 소위 '5% rule'의 적용을 받아, 지배 목적이 아닌 한 사업회사의 의결권주식을 5%(비의결권주식의 경우는 25%)까지 보유할 수 있었음
 - GLBA 이후에는 5% rule이 여전히 적용되는 가운데, 은행은 금융지주회사 산하의 증권자회사를 통해 사업회사의 주식 등을 인수하여 일정 기간 보유한 후 매각하는 투자업무인 merchant banking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벤처기업 주식을 10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되었음⁹⁾
 - GLBA는 지주회사 방식으로 은행과 증권 등 비은행금융업의 겸영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금융지주회사에게 '본원적 금융업무 또는 이에 부수하는 업무'나 '금융업무를 보완하는 업무를 허용함으로써 은행에 의한 산업자본 소유를 사실상 허용하게 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 도드-프랭크법이 제정되었고, 은행에 의한 산업자본 소유는 다시 금지됨
-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주요 투자은행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되고, 금융감독기구가 전면적으로 개편되면서,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가 이루어짐
 - 도드-프랭크법은 은행의 업무 영역을 다시 구분하여, 상업은행의 투자은행 겸영을 다시 금지하고 은행에 의한 산업자본 소유를 금지함
 - 도드-프랭크법상 예금취급기관과 그 지배회사의 자기자본투자,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지분취득

6) 12 U.S.C.A. § 371c

7) 12 U.S.C.A. § 371c-1

8) 12 U.S.C.A. § 1831a

9) 12 U.S.C.A. § 1843(k)(4)(H)(7)

과 경영 지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감독강화 방안(이른바 볼커 룰(Volcker Rule))이 포함

□ 미국법상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 소유 규제'는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이하 BHCA)에 의해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

○ 1956년 제정된 BHCA에 따라, 은행 의결권 주식의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기업은 BHCA의 규제를 받아 은행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는 업무에는 참여할 수 없고, 일반 사업회사는 원칙적으로 은행을 보유할 수 없게 되었음

- BHCA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은행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는 업무에 참여할 수 없고, 일반 사업회사는 FDIC의 부보를 받는 은행을 소유할 수 없음¹⁰⁾

- 1970년 개정된 BHCA에 따르면, 상사복합그룹(commercial conglomerates)이 1개의 은행만을 자회사로 두는 은행지주회사를 다수 설립하는 경우에도 BHCA가 적용되어 소유가 금지됨

- 1980년대 일반 사업회사들이 FDIC의 예금부보를 받는 상당수의 '비은행 금융기관'을 인수하자, 1987년 '경쟁적 형평성 은행법'(Competitive Equality Banking Act of 1987, 이하 CEBA)이 제정되어, 일반 사업회사들의 비은행금융기관 인수가 제한됨. CEBA에 따르면, 어떠한 산업자본도 FDIC 예금부보를 받는 은행들을 소유할 수 없게 됨

- 1990년대 들어, 일반 사업회사들이 FDIC의 예금부보를 받는 저축대부조합들을 인수하자, 1999년 이른바 금융서비스현대화법(GLBA)이 제정되어, 저축대부조합에 대한 추가적인 인수가 금지됨

○ BHCA는 사업회사의 은행 주식 보유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지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은행 주식을 25%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배력을 행사할 목적의 주식 보유는 불가능. '지배'란 25% 이상의 의결권주식을 보유하거나, 임원 과반수 선출 능력을 보유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

- 일반 사업회사가 25%를 초과하는 은행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로 간주되어 검사 및 감독을 포함한 규제 대상이 되고, 100% 이상의 은행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3. 금산분리와 은행의 업무범위 규제 현황

□ 연방인가은행의 업무범위는 고유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로 구분

○ 연방은행법은 연방인가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5가지 고유업무(core business)를 규정¹¹⁾

- 연방은행법상 명시된 5가지의 고유업무는 ① 약속어음, 환어음 및 기타 채무증서의 할인 및 매입(discounting and negotiating promissory notes, drafts, bills of exchange, and other evidences of debt), ② 예금 수입(receiving deposits), ③ 환, 동전 및 금의 매매(buying and selling exchange, coin and bullion), ④ 인적 대출(loaning money on personal security), ⑤ 어음의 취득, 발행 및 유통(obtaining, issuing and circulating notes)

- 5개의 고유업무 이외에 판례 및 OCC의 유권해석에 따라 확장된 은행업무들로, ⑥ 연금상품(annuities)의 판매 대리(agent), ⑦ 정보처리(data processing services), ⑧ 결제(corresponding banking services), ⑨ 신용카드(credit verification), ⑩ 보증신용장의 발행(standby letters of credit), ⑪ 인터넷은행서비스(internet banking services) 등이 있음

10) 12 U.S.C.A. §§ 1841(c)(1), 1843(a), (c) & (k)

11) 12 U.S.C.A. § 24(Seventh)

○ 연방인가은행은 연방법원과 OCC 유권해석에 의해 은행업의 일부 또는 부수업무(part of or incidental to the business of banking)를 영위할 수 있음

- 대표적인 부수업무로는 ① 파생상품 거래 업무, ② 여행자수표 발행 등 여행 관련 업무, ③ 고객을 위한 금융 자문 및 상담(financial advisory and counseling) 업무, ④ 기업 인수합병 거래(merger and acquisition, M&A) 등의 자문 업무, ⑤ 부동산 매매 상담 업무, ⑥ 세금 관련 자문 업무 등

○ 그 밖에 연방인가은행은 연방규정 및 OCC 유권해석에 의해 몇 가지 겸영업무가 인정됨

- 연방인가은행의 겸영업무로는 ① 증권 의 중개 업무(securities brokerage), ② 국공채의 매매(dealing) 및 인수(underwriting) 업무, ③ 증권 대여(securities lending) 업무, ④ 증권 투자, ⑤ 사모 증권 모집 업무, ⑥ 자산유동화증권 매매 업무, ⑦ 명의개서(transfer agent) 업무, ⑧ 환매조건부 증권(repurchase agreement) 매매 업무, ⑨ 신탁 업무, ⑩ 투자 자문 업무, ⑪ 투자 일임 업무, ⑫ 보험의 판매 대리 업무, ⑬ 금융리스 업무 등

□ 은행의 의결권 주식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BHCA의 규제를 받는 은행지주회사이며, 업무범위가 제한됨

○ BHCA상 '은행'이란 ① FDIC의 예금보험제도에 참여하는 은행, ② 수표 발행 등으로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과 상업 용자를 모두 취급하는 기관을 의미¹²⁾

○ BHCA에 따르면,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회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은행지주회사는 은행 이외의 회사를 자회사로 할

수 없음. 나아가 은행지주회사 자신의 업무범위 역시 은행업 또는 은행업에 부수하여 자회사 관리 등으로 한정됨¹³⁾

○ 그러나 BHCA상 산업은행(industrial bank)의 예외조치 등 몇 가지 금산분리 예외 규정이 존재하고 있어, 일반 사업회사가 은행지주회사로서의 규제나 FRB의 감독을 받지 않고 은행을 지배할 수 있는 여지가 인정되고 있음

4. 금산분리 규제 완화 동향

□ 은행지주회사법(BHCA)은 원칙적으로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회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삼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은행지주회사는 은행 이외의 회사를 자회사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은행지주회사의 업무범위 역시 은행업 또는 은행업에 부수하여 자회사 관리 등으로 한정

○ 이러한 방식으로 BHCA는 은산분리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BHCA는 '은행'의 정의에서 '산업은행'(industrial bank)을 제외함으로써 산업자본이 산업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⁴⁾

○ BHCA의 체계상 원칙적으로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회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은행지주회사는 은행 이외의 회사를 자회사로 할 수 없음. 또한 은행지주회사의 업무범위 역시 은행업 또는 은행업에 부수하여 자회사 관리 등으로 한정

○ 산업은행은 BHCA상 두 가지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① 1987년 5월에 FDIC에 가입할 것을 규정한 주에서 인가를 받아야 하고,¹⁵⁾ ② 1억 달러 미만의 자산을 보유하거나 요구불예금

12) 12 U.S.C.A. § 1841(c)(1)

13) Richard S. Carnell, Jonathan R. Macey, and Geoffrey P. Miller, *The Law of Financial Institutions*, 5th ed., Wolters Kluwer, 2013, p.413

14) 12 U.S.C.A. § 1841(c)(2)(H)

15) 여기에 해당하는 주로는 네바다주, 미네소타주, 유타주, 인디애나주,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하와이주가 있다.

을 수령하지 않아야 함

- 산업은행이란 주법에 따라 설립되는 금융기관으로, 일반적으로 '산업융자회사'(industrial loan company, 이하 ILC)라고 불림. 유타주에서 인가 받은 ILC 상호에는 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유타주법에서는 ILC가 아닌 industrial bank라는 용어를 사용

- ILC는 요구불예금을 수령할 수는 없으나, 개인과 비영리법인에게 당좌예금식 저축예금계좌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모든 ILC는 영리법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표인출이 가능한 예금계좌를 제공할 수 있음

○ BHCA의 규제대상에서 ILC가 제외된 것은 1987년의 개정 CEBA에 의한 것임

- 1999년 사업회사의 저축대부조합 보유에 관한 규제체계가 강화되면서, 전통적인 은행업을 영위하고 싶은 일반 사업회사는 BHCA상의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 ILC 보유를 선택하였음¹⁶⁾

- 특히, 자동차 제조업과 소매업 분야의 일반 사업회사들의 ILC 보유 움직임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Merrill Lynch, Goldman Sachs, Morgan Stanley와 같은 투자은행들도 BHCA의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전통적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선택지로서 ILC를 활용하고 있었음¹⁷⁾

○ 다만, 2010년의 도드-프랭크법에서는 FDIC가 동법 시행일로부터 3년 동안 사업회사에 의한

ILC 보유계획을 승인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음.¹⁸⁾

- 구체적으로, FDIC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제약하고, 미국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에 BHCA의 규제 대상에 ILC가 제외되어 있는 규정의 합리성 조사를 요청하고 있었음.¹⁹⁾ 그러나 2012년에는 GAO의 조사보고서²⁰⁾가 공표되었으나, FDIC의 권한제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음²¹⁾

○ 현행 BHCA상 ILC 보유를 통해 일반 사업회사는 전통적인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자회사를 둘 수 있다는 점에서 은산분리 규제의 예외조치라고 볼 수 있음

- 2020년 3월, FDIC는 일반사업회사인 Square사가 유타주법에 따라 설립하고자 하는 ILC의 예금보험제도 참여를 승인하고 이를 공표한 바 있음²²⁾

- Square사의 주요 사업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서비스의 제공인데, 새로 설립하는 ILC를 통해 결제서비스 고객인 사업자에 대한 대출과 예금상품을 동시에 제공하고자 하고 있음. Square사의 ILC 설립은 은행 보유와 관련된 은행지주회사의 적용제외 규정을 이용한 것임²³⁾

□ 1999년의 GLBA에 따라 일정한 조건 하의 금융지주회사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제도의 적용을 받음²⁴⁾

16) Mehrsa Baradaran, "Reconsidering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The George Washington Law Review*, Vol. 80, Issue 2, 2012, pp.422-423

17)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Industrial Loan Corporations: Recent Asset Growth and Commercial Interest Highlight Differences in Regulatory Authority," GAO-05-621, September 22, 2005, p.19

18) Dodd-Frank Act § 603(a)(2)(4)

19) Dodd-Frank Act § 603(b)(1)

20)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Characteristics and Regulation of Exempt Institutions and the Implications of Removing the Exemptions," GAO-12-160, Jan. 2012

21) Elizabeth J. Upton, "Chartering Fintech: The OCC's Newest Nonbank Proposal," *The George Washington Law Review*, Vol. 86, Issue 5, 2018, p.1414

22) FDIC, FDIC Approves the Deposit Insurance Application for Square Financial Services, Inc., Salt Lake City, Utah(March 18, 2020)

23) FDIC, FDIC Seeks Comment on Proposal to Ensure Safety and Soundness of Industrial Banks(March 17, 2020) <<https://www.fdic.gov/news/news/press/2020/pr20031.html>> (2023. 7. 29. 최종검색); FDIC, 12 CFR Part 354; Parent Companies of Industrial Banks and Industrial Loan Companies; Proposed Rule, Federal Register/Vol. 85, No. 62/Tuesday, March 31, 2020

24) 이에 관하여는 Saule T. Omarova, "The Merchants of Wall Street: Banking, Commerce, and Commodities," *Minnesota Law Review*, Vol. 98, Issue 1, 2013, pp.265-355 참조

○ Merchant banking으로서 인정되는 업무를 통해, 일반 사업회사의 주식을 투자 목적으로 규모의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게 되었음²⁵⁾

- 금융지주회사는 merchant banking으로서 일반사업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는 금융의 성질을 가진 업무 범위 내에서만 인정됨
- 이 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사업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할 수도 있고, 주식 이외의 지분을 취득할 수도 있음. 다만, 이러한 주식 취득이 금융적 성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
- ①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한 예금취급금융기관 및 그 자회사는 merchant banking 업무로서 주식 등을 보유할 수 없음²⁶⁾
- ② 주식 취득은 그 가치의 증가 및 매각이익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해야 함²⁷⁾
- ③ merchant banking 업무로서 주식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금융지주회사는 1934년 증권거래소법에 따른 브로커딜러로 등록을 받거나 해당 등록을 받은 회사를 자회사로 하거나 보험업에 종사하는 자회사와 해당 자회사에 투자 자문을 실시하는 1940년 투자자문법에 따른 등록을 받은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²⁸⁾
- ④ merchant banking 업무로서 취득한 주식 등의 보유는 그 목적이 주식 등의 가치 증가 및 매각이익 실현 등인 것과 모순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으로 한정됨²⁹⁾
- ⑤ 금융지주회사는 merchant banking 업무로서 주식 등을 보유하는 기간이나 주식 등의 처분으

로 합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상 사업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에 관여할 수 없음³⁰⁾

○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무(financial activity) 자체는 아니지만, 금융업무를 보완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업무(보완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³¹⁾

- BHCA상 보완업무는 예금취급금융기관 및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전성과 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으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는 스스로 보완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보완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사업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기 위해서는 FRB에 사전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최근 핀테크(Fintech) 기업들에 대해 연방 차원의 은행면허를 부여하여 연방면허로 미 전역에서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 OCC는 2018년 핀테크 기업에 대한 면허 부여를 목적으로 '특수목적 연방인가은행'(Special Purpose National Bank) 면허로서, 'Fintech Charter' 제도를 구축하였음³²⁾

- 2010년대 들어, 핀테크 기업들이 경제 산업계 전반에 대두되면서, 대출업무 또는 결제업무를 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 연방은행법상의 면허를

25) 12 U.S.C.A. § 1843(c)(6)

26) 12 U.S.C.A. § 1843(k)(4)(H)(i)

27) 12 U.S.C.A. § 1843(k)(4)(H)(ii)

28) 12 C.F.R. § 225.170(f)

29) 12 U.S.C.A. § 1843(k)(4)(H)(iii)

30) 12 U.S.C.A. § 1843(k)(4)(H)(iv)

31) 12 U.S.C.A. § 1843(k)(1)(B)

32) Fintech Charter에 대해서는 Lawrence D. Kaplan et al., "The OCC's Proposed Fintech Charter: If It Walks Like a Bank and Quacks Like a Bank, It's a Bank," *Banking Law Journal*, Vol. 134, Issue 4, 2017, pp.192-207; J. P. Murphy, "More Sense than Money: National Charter Option for FinTech Firms is the Right Choice," *North Carolina Journal of Law & Technology*, Vol. 18, Issue 5, 2017, pp.360-408; Sabrina Chartrand, "The OCC's Step Towards Innovation: The Fintech Charter," *Review of Banking & Financial Law*, Vol. 38, No. 511, 2019, pp.511-524 등 참조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지적되어 왔음

- 미국법상으로는 대출이나 송금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주 차원의 은행면허가 필요했는데, 미 전역에서 해당 업무를 영위하는 핀테크 기업들은 각 주로부터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었음
- 핀테크 기업들에 대해 연방 차원의 은행면허를 부여하여 연방면허로 미 전역에서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었음
- 이에 OCC는 2018년 핀테크 기업에 대한 면허 부여를 목적으로 '특수목적 연방인가은행'(Special Purpose National Bank) 면허로서, 'Fintech Charter' 제도를 도입
- 즉, 특수목적 연방인가은행이란 업무범위에 특수한 제한이 존재하는 연방인가은행으로,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Fintech Charter가 필요
- Fintech Charter의 특징은 3가지 기본적인 은행 업무인 ① 예금취급업무, ② 수표지급업무, ③ 대출업무 중 예금취급업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음. 즉, Fintech Charter에 근거한 은행들은 예금취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BHCA상 '은행'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음

○ Fintech Charter를 취득한 은행들도 연방인가은행의 일종이므로, 연방은행법과 OCC 규제체계상 다른 연방인가은행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됨

- 2019년부터 핀테크 기업들이 Fintech Charter에 근거하여 특수목적 연방인가은행 면허를 취득하

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음

- 제휴은행의 예금·대출을 중개하는 형태로 고객에게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던 Varo Money사는 자회사 Varo Bank N.A.를 통해 자체 은행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연방인가은행 면허를 신청하였고, 2019년 7월 OCC가 이를 인가한 바 있음. 이는 핀테크 기업 최초의 연방인가은행 면허 취득 사례라 할 수 있음
- 학자금 대출 등의 교육관련 대출사업을 주요 영업으로 하는 NelNet도 자회사 NelNet Bank를 통해 특수목적 연방인가은행 면허를 취득하였음
- 자회사 설립의 방식이 아닌 핀테크 기업에 의한 연방인가은행 인수가 허용된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 2019년 9월 제휴은행의 예금 중개와 자사 증권 서비스 제공을 주영업으로 하는 Jiko Group은 미네소타주의 소규모 은행인 Mid-Central National Bank를 인수한 바 있음
- Fintech Charter를 취득한 은행을 보유한 사업회사는 은행지주회사로서의 규제를 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비판하는 견해가 있음³³⁾
- 또한 Fintech Charter 부여에 대한 OCC의 권한 유월을 쟁점으로 하는 소송도 제기되는 등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음³⁴⁾

〈표 2〉 미국 핀테크 기업들의 은행보유 현황

핀테크 기업	자회사 은행	은행면허의 종류	인가요건 등
Varo Money, Inc.	Varo Bank, N.A.	특수목적 연방인가은행 (OCC)	- Tier 1 레버리지 비율 10% - 모회사는 은행지주회사 면허 취득
Square, Inc.	Square Financial Services	ILC (유타주, FDIC)	- Tier 1 레버리지 비율 20%
NelNet	NelNet Bank	ILC (유타주, FDIC)	- Tier 1 레버리지 비율 12%
Jiko Group, Inc.	Mid-Central National Bank	특수목적 연방인가은행 (OCC)	- 매수 인가 - 모회사는 은행지주회사 면허 취득

자료: <https://www.spglobal.com/>

33) Upton, *op. cit.*, p.1433

34) *Lacewell v.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2019 U.S. Dist. LEXIS 182934

III. 영국의 금융업 규제와 금산분리

1. 금융업 규제 일반

□ 영국의 금융업 규제는 금융안정의 건전성 유지를 관리 감독하는 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보호와 시장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행위규제로 구분된다.

○ 영국의 '건전성 감독청'(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이하 PRA)은 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 대규모 투자회사의 금융안정과 건전성 유지를 위한 규제 및 감독을 담당

○ 영국의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이하 FCA)은 PRA와는 달리 독립법인의 형태로, 모든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실시하며, PRA 피감기관 이외 금융기관에 대한 미시건전성 감독을 담당

□ 금융업 규제와 관련한 영국의 대표적인 법률로는 2000년의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이하 FSMA 2000), 은행법(Banking Act 2009), 2012년의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2012, 이하 FSMA 2012), 2013년의 은행개혁법(The Financial Services (Banking Reform) Act 2013), 2021년의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2021, 이하 FSA 2021) 등이 있음

○ 영국은 2000년 기존의 각종 금융업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FSMA를 제정함으로써, 금융업의 겸업주의 수용, 자율규제의 한계 극복, 금융기관별 규제의 비효율 및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기능별 규제 도입, 금융범죄에 대한 대처를 일원적으로 관리·취급

- 2000년 FSMA는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규제·감독을 포괄적·횡단적으로 정하는 체제로, PRA와

FCA 모두 동법 위임에 근거해 일반원칙을 제정하고, 원칙 산하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정이나 구속력이 없는 지침 등을 제정

- 영국의 이러한 규제방식을 원칙중심(principle base) 규제라 하며, 그 원칙하에서 PRA와 FCA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규칙 제정권을 가지고 있음

□ 브렉시트(Brexit) 및 금융업 DX에 맞춘 금융규제 개혁조치

○ 브렉시트에 따른 기존 금융규제 관련 EU법제의 자국법화 조치

- 영국은 EU 탈퇴를 통해, EU 회원국 시절 제정한 금융서비스 관련 규정 대부분을 영국법으로서 직접·간접적으로 대체하거나 수용

-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 효과를 완화하고 금융서비스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 금융서비스법(FSA)을 제정.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 정책 수립 시 국제기준 고려,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영국의 위상, 금융서비스 동등성 및 안정성에 관한 고려 조치 등의 내용이 담김

○ 암호자산 교환업자에 대한 규제 검토 진행

- 2022년 10월 의회에 제출된 '금융서비스시장법 개정안'(A Bill proposing amendments to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2)에서는 모든 암호자산을 규제할 권한을 FCA에 부여

- 2023년 9월부터는 가상자산 이전 시,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말하는 '트래블룰'(travel rule)을 도입

○ 소규모 금융기관의 경쟁 촉진

- 브렉시트 이후, 투자은행(investment bank)과 소매은행(retail bank) 간의 리스크 이전을 막는 규제 조항인 '링 펜스'(ring fence) 규제³⁵⁾에 관한 재검토 단행

35) 링 펜스 제도는 2013년 은행개혁법상 도입된 제도로, 금융시스템 충격으로부터 은행의 핵심업무를 보호하고 부실은행 정리 시 핵심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은행의 예금취급업무를 투자금융업무와 분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링펜스 은행(ring-fenced body)만이 핵심업무(core activity)를 영위할 수 있으며, 링펜스 은행의 배제업무(excluded activity) 수행은 금지된다. 핵심업무는 예금수취(accepting deposits), 배제업무는 자기명의 투자업무(dealing in investment as principal) 등이며 세부 내용은 재무부가 정한다.

- 그 결과 소매업무를 주력으로 하는 소규모 금융 기관은 링펜스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 이로써 소 규모 금융기관의 비용부담 경감

○ 레귤러토리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운용

- 영국에서는 FCA 규칙의 변경·적용 면제 조항을 이용하여 금융 서비스 혁신을 목적으로 한 레귤러토리 샌드박스를 2016년 이후 도입하고 있음³⁶⁾
- 현재 'regulatory nursery'라는 샌드박스발 기업 팔로우업 제도도 병용하며 운용 중에 있고, 금융 시장 인프라 샌드박스(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sandbox) 도입 방침도 제시하고 있음³⁷⁾

□ 2022년 금융서비스시장법 개정안

○ 2022년 7월, 영국 재무부(HM Treasury)는 '금융 서비스시장법안(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Bill)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현재 상원(House of Lords)에서 심의 중에 있음

- 법안에서는 금융규제당국의 목적에 금융서비스 섹터를 포함한 영국의 경제성장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추가하고,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규제기능의 강화를 위해 FCA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그 밖에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금융규제당국의 설명의무를 높이기 위한 강화조치,³⁸⁾ EU로부터 승제한 자본시장 감독규제의 개정, 제2차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II)에서 정하는 주식거래 의무, 익명거래시장인 다크풀(dark pool)에서의 거래량 제한, 스테이블코인 결제수단으로서의 안전성 채택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2. 금산분리 규제 체계

□ 영국법상 '은행에 의한 산업자본 소유'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고, 은행은 산업자본을 100% 소유할 수 있음

○ 영국은 브렉시트 이전부터 'EC 제2차 은행지침'(EC 2nd Banking Directive)을 따르고 있는데, 제2차 은행지침에 의하면 은행의 산업자본 소유와 관련한 투자 보유제한 규정이 있음

- EC 제2차 은행지침에 따르면, 은행은 사업회사에 대한 적격투자(qualifying investment) 또는 적격보유(qualifying holding)의 제한을 받음³⁹⁾
- 하나의 사업회사에 대한 은행의 적격보유·투자는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할 수 없고(EU 제2차 은행지침 제12.1조), 이러한 적격보유·투자를 모두 합한 규모는 자기자본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EU 제2차 은행지침 제12.2조). 다만, 금융구조조정 기간, 구제금융 또는 정상인수 기간 중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
- 영국은 이와 같은 EC 제2차 은행지침에 준거하되, 사업회사 총 발행주식의 20%를 초과할 경우 자기자본비율규제에서 해당액을 자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영국법상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 소유'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고, 일반 사업회사는 은행 주식의 100% 보유가 원칙적으로 가능

○ 제2차 은행지침에 따를 때, 이 경우 감독당국은 주요주주⁴⁰⁾의 적격성을 심사·감독하고 부적격 주주를 배제할 권한을 가짐

○ 감독당국이 주요주주의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0%를 초과하는 은행 주식 소유는 불가능

36) 레귤러토리 샌드박스는 영국 FCA가 잠재적 사업자에게 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시범 영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금융규제가 없는 일종의 가상공간을 의미한다.

37)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consultation-on-the-digital-securities-sandbox>> (2023. 8. 10. 최종검색)

38) 예컨대, 공익에 기반할 경우, 정부가 금융규제당국에 규제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다.

39) EC 제2차 은행지침상 적격투자·적격보유란 투자기업 자본금이나 의결권의 10% 이상 또는 기업경영상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직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40) EC 제2차 은행지침상 주요주주란 은행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거나 은행 경영에 현저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주주를 의미한다.

3. 은행의 업무범위 규제 현황

- 영국법상 예금취급금융기관으로 은행, 주택금융조합, 신용조합이 있음
 - 2000년 FSMA에 의한 금융기관 규제는 실질적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 및 기능 기반으로 적용되므로, 실질적인 규제 적용은 금융기관의 업무, 서비스, 기능, 고객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
 - 법령상 '은행'의 정의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다음을 가리켜 은행(bank)이라는 용어를 사용
 - 2000년 FSMA에 따라 예금 수입을 포함한 규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파트 4A 허가를 받은 회사로 영국의 EU 탈퇴 후에도 영국 법체계에 직접 편입된 '지속 EU법'(Retained EU Law)상의 신용기관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가 얻고 있는 파트 4A 허가에서 은행에 적용되는 것과 동등한 건전성 기준 준수를 요구받고 있는 회사(신용조합 또는 주택금융조합은 제외)
 - 유럽경제영역(EEA) 내 은행으로 영국의 EU 탈퇴 후에도 영국 법체계에 직접 편입된 '지속 EU법'에 따라 신용기관이 인정하는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회사
 - 주택금융조합(building society)은 1986년 주택금융조합법(Building Society Act 1986)에 따라 설립되는 금융기관으로,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주된 업무로 하며 자금조달의 대부분을 조합원으로부터 실시
 - 신용조합(credit union)은 1979년 신용조합법(Credit Union Act 1979)상의 면허업자인 신용조합으로서 2014년 협동공제조합법(Co-operative and Community Benefit Societies Act 2014)에 따라 등록된 법인을 의미
 - 신용조합은 직역, 거주지역 등을 단위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원으로부터의 출자 이외의 형태에 의한 예금 수입은 허용되지 않음. 또한 대출처는 조합원으로 한정

4. 금융업 DX 규제 동향

- 디지털뱅크 면허 부여
 - 영국법상 디지털뱅크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나, 예금취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PRA로부터 은행면허를 취득해야 함
 - 소매은행(retail bank) 시장의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신규 진입이 장려되고 있음
 - PRA는 2013년 신규 진입 은행에 대한 최저 자본금을 100만 유로 또는 100만 파운드(어느 쪽보다 높은 편)로 인하
 - PRA와 FCA는 2016년 신규 진입 은행 지원 부서(New Bank Start-up Unit)를 설치하여 신규 진입 은행 면허 신청절차를 폭넓게 지원함
- 디지털뱅크 사례
 - Starling Bank는 Allied Irish Banks의 전 COO인 Anne Boden에 의해 2014년 설립되어, 2016년에 은행 면허를 취득하고 은행업에 진출
 - 2021년 3월 서비스 이용자 수는 200만 명 초과
 - Starling Bank는 회계 애플리케이션 'Zero' 또는 연금 서비스인 'pensionbee', 온라인 투자 서비스 'Wellspy' 등을 통합한 파이낸스 앱을 제공하고 있음
 - Monzo Bank는 Go Cardless의 창업자인 Blomfield에 의해 2015년 설립되어 체크카드 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에 은행 면허를 취득하고 은행업에 진출
 - 편리한 은행 계좌 개설로 인기. 2022년 7월 서비스 이용자 수는 580만 명 초과
 - Revolut는 핀테크 기업으로 시작하여 EU중앙은행의 특수은행면허와 영국 EMI 인가를 받음
 - 통화, 환전, 송금이 주요 업무범위이고, 일부 국가에서는 주식 거래와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도 제공. 2022년 12월 서비스 이용자 수는 2,000만 명 초과

IV. EU의 금융업 규제와 금산분리

1. 금융업 규제 일반

□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유럽의회(parliament) 이사회(council)가 제정한 규칙(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ecision), 권고/의견(Recommendation/Opinion) 등으로 구성된 금융규제 법률 체계에 근거하여 업종 규제를 실시

○ EU Regulation은 EU 회원국의 변경 또는 수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EU 이사회의 제정 즉시 별도 국내 입법 없이 회원국 각국에 효력을 가짐

- 금융규제와 관련한 주요한 EU Regulation으로는 '제2차 자본요건규칙'(Capital Requirement Regulation II, CRR II), '금융상품시장규칙'(Regulation (EU) No 600/2014 ... on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Regulation, MiFIR), '시장남용규칙'(Regulation (EU) No 596/2014 ... on Market Abuse (Market Abuse Regulation), MAR), '유럽시장 인프라규칙'(Regulation (EU) No 648/2012 ... on OTC Derivatives, Central Counterparties and Trade Repositories, EMIR), '신용평가기관규칙'(Regulation (EC) No 1060/2009 ... on Credit Rating Agencies), '지속가능한 금융공시규칙'(Regulation (EU) 2019/2088 ...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등이 있음

○ EU Directive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일부 변경 또는 수정이 가능하며, 회원국 각국의 국내법화(implimentation) 절차를 거쳐 법률로서 효력을 가짐

- 금융규제와 관련한 주요한 EU Directive로는 '제2차 은행지침'(Second Banking Directive), '제5차 자본요건 지침'(Capital Requirements Directive 5, CRDV), '제2차 금융상품시장 지침(통칭: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II, MiFID II), '제2차 도산 지침(Solvency II Directive), '보험판매업무

지침'(Insurance Distribution Directive, IDD), '제2차 시장남용 지침'(Market Abuse Directive II, MAD II) 등이 있음

○ EU Decision은 EU 이사회 이외의 유럽중앙은행 등 별도의 EU기구도 발령이 가능하며, 특정 회원국 또는 특정 기업 등에 대해 구속력을 가짐

- Decision on Italy: 이탈리아 재정위기 당시 재정적자 조치계획 규범

○ EU Recommendation 또는 Opinion은 EU 각 회원국의 준수를 권고하거나 그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는 구속력 없는 규범

□ 현재까지는 EU Directive를 기초로 EU 회원국 각국이 국내법을 정비하는 방식의 입법이 주류였으나, 최근에는 EU 금융시장의 통일성 강화를 목적으로 회원국 각국에 대해 직접 구속력을 가지는 EU Regulation 제정이 확대되고 있음

○ 은행 건전성 규제인 자기자본요건지침(CRD)의 경우,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각국 규제의 단편화 해소를 위한 정량적으로 규율 방안으로 자기자본요건규칙(CRR)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음

□ 금융업 규제에 관하여는 EU 회원국 간 횡단적 금융감독을 실시하는 유럽금융감독제도(European System of Financial Supervision, ESFS)가 채용되고 있음

○ EU 차원에서의 전체적인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감독하는 기관으로 '유럽시스템관리위원회'(European Systemic Risk Board, ESRB)가 존재

- ESRB는 거시건전성 감독기구로, EU 역내 금융안정성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모니터링, 리스크 조기경고 및 권고조치 등 담당

- Regulation (EU) No 1092/2010 establishing the ESRB에 근거

○ 개별 금융업 규제에 대해서는 은행, 증권, 보험 각 업태별 감독기관이 존재하며, 이를 통합하여

‘유럽감독기구’(European Supervisory Authority, ESA)라 하며, Regulation (EU) No 1094/201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November 2010 establishing a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y에 근거함⁴¹⁾

- 은행업 감독에 대해서는 Regulation (EU) No 1093/2010 establishing the EBA에 근거한 ‘유럽은행감독기구’(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가 담당
- 증권업 감독은 Regulation (EU) No 1095/2010 establishing the ESMA에 근거한 ‘유럽증권시장감독기구’(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가 담당
- 보험업 감독은 ‘유럽보험연금감독기구’(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EIOPA)가 담당

2. 금산분리 규제 체계

□ EU의 금융규제 체계상 ‘은행에 의한 산업자본 소유’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고, 은행은 산업자본을 100% 소유할 수 있음

○ EU의 제2차 은행지침에 따르면, 은행은 일반 사업회사에 대한 적격투자(qualifying investment) 또는 적격보유(qualifying holding)의 제한을 받고 있음⁴²⁾

- 적격투자 또는 적격보유란 투자기업 자본금이나 의결권의 10% 이상 또는 기업 경영상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의미

○ 구체적으로 제2차 은행지침에 따르면, 은행은 하나의 사업회사에 대한 적격보유·투자가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할 수 없고(제2차 은행지침 제12.1조), 이러한 적격보유·투자를 모두 합한 규모는 자기자본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제2차 은행지침 제12.2조)

○ 다만, 금융구조조정 기간, 구제금융 또는 정상인수 기간 중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이러한 적격보유·투자 제한의 예외가 인정됨

○ EU의 각 회원국은 제2차 은행지침을 수용하되 그 규제 수준의 강약을 개별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바, 구체적으로는 다음 표와 같음

〈표 3〉 각 EU 회원국의 은행에 의한 사업회사 주식의 보유

제2차 은행지침보다 엄격한 규제	
이탈리아	자기자본대비 3%(1회사), 15%(전체), 중앙은행 허가 필요
포르투갈	사업회사 총발행주식의 25%
스웨덴	자기자본대비 40%(전체), 사업회사 총발행주식의 5%
제2차 은행지침에 준거하되 추가 규제	
벨기에	자기자본대비 15%(1회사), 45%(전체)
덴마크	항구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금지
핀란드	사업회사 총발행주식의 10% 초과시 중앙은행 허가 필요
네덜란드	사업회사 총발행주식의 10% 초과시 재무부 허가 필요

자료: 김동환, 『저성장·디지털 시대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과 규제』, KIF연구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2021, p.24

41) EU 금융규제와 관련하여, EBA, ESMA 및 EIOPA의 3개 기관(ESA)에 EU 전체에 적용되는 규제기술기준(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RTS), 실시세칙에 해당하는 실시기술기준(implementing technical standards, ITS)을 제정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RTS와 ITS 제정은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에 의한 유럽위원회 위임입법(EU운영조약 제290조)의 형식에 따르고 있다.

42) 김동환, 『저성장·디지털 시대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과 규제』, KIF연구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2021, p.23

〈표 4〉 각 EU 회원국의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 주식의 보유

제2차 은행지침보다 엄격한 규제	
이탈리아	은행 총발행주식의 5%. 중앙은행 허가 필요
룩셈부르크	특별한 규제는 없으나, 행정운영상 사업회사가 주요주주가 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
스웨덴	특별한 규제는 없으나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 주식 보유 사례가 거의 없음
제2차 은행지침에 준거하되 추가 규제	
벨기에	주요주주의 정의는 5% 초과
아일랜드	5% 이상 주식 취득하는 경우 사전신고 필요
네덜란드	주요주주의 정의는 5% 초과
스페인	5% 이상 주식을 취득할 경우 중앙은행의 허가 필요

자료: 김동환, 『저성장·디지털 시대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과 규제』, KIF연구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2021, p.25

□ EU의 금융규제 체계상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 소유’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고, 일반 사업회사는 은행 주식의 100% 보유가 원칙적으로 가능⁴³⁾

○ 다만, 제2차 은행지침에 따르면, 이 경우 감독당국은 주요주주의 적격성을 심사·감독하고 부적격 주주를 배제할 권한을 가지며, 감독당국이 주요주주의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0%를 초과하는 은행 주식 소유는 불가능

○ EU의 각 회원국은 제2차 은행지침을 수용하되 규제 수준의 강약을 개별적으로 조정하고 있음

- 이탈리아 같은 경우, 산업자본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점에서 제2차 은행지침보다 엄격한 규제 실시

3. 은행의 업무범위 규제 현황

□ EU 금융규제법상 은행업무를 하는 금융기관은 ‘신용기관’(credit institution)이라 불리며, 제5차 자본요건지침(Directive (EU) 2019/878)에 따라 설립됨

○ 제5차 자본요건지침에서는 신용기관을 ‘예금 또는 기타 환불 가능한 자금을 시중으로부터 받아 자기계정으로 신용공여를 실시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사업자’로 정의(제5차 자본요건지침 제3조 제1항 (1))

○ 제5차 자본요건지침에 따르면, 신용기관의 상당수는 은행 업무와 증권 업무의 겸업이 가능한 유니버설 뱅크(universal bank)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제5차 자본요건지침상 신용기관이 EU 역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업무범위로는 (1) 예금 및 기타 환불 가능한 자금의 수입, (2) 대출(소비자신용, 저당신용, 팩토링, 상업신용), (3) 금융리스, (4) 송금 서비스, (5) 지불수단(신용카드, 여행자수표, 은행수표 등)의 발행 및 관리, (6) 지급보증 및 용자 한도, (7) 자기계정 또는 고객계정에서의 금융상품 거래업무, (8) 단기금융시장상품, 외환, 금융선물·옵션, 외환 및 금리에 따른 금융상품, 양도가 가능한 유가증권, (9) 유가증권 발행 참여 및 유가증권 발행 관련 서비스 제공, (10) 기업 컨설팅 업무 및 인수합병 관련 서비스, (11) 단기 금융시장상품 매개, (12) 포트폴리오 관리 및 조언, (13) 유가증권의 보관·관리, (14) 신용조회 서비스, (15) 보관 및 금고 서비스, (16) 전자화폐 발행 등

□ EU 각 회원국은 신용기관에 대해 업무 개시 이전에 면허 취득 요건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함(제5차 자본요건지침 제8조)

○ 신용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상 사업소(원칙적으로 본점) 소재국에서 신용기관의 감독을 담당하는 은행감독기구로부터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법인이 아닌 신용기관의 경우 본점 소재

43) 이태규, “은행민영화와 소유규제 개선”, 『금융연구』 제20권, 한국금융연구원, 2006, p.47

국의 은행감독기구로부터 면허를 취득(제5차 자본요건지침 제13조 제2항)

- 제5차 자본요건지침상 구체적인 면허 요건 설정
 - 신용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① 500만 유로 이상의 초기 자본을 가져야 하고(제5차 자본요건지침 제12조 제1항), ② 업무집행권자가 2명 이상 존재하고 그 경영조직의 구성원이 양호한 평판과 업무경험을 충분히 가져야 하며(제5차 자본요건지침 제13조 제1항, 제91조 제1항), ③ 신용기관의 건전 경영 확보 필요성에 따라 은행감독기구는 해당 신용기관 출자자의 적격성을 인정해야 하고(제5차 자본요건지침 제14조 제2항, 제23조), ④ 신용기관과 기타 자연인 또는 법인 간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제3국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집행이 회원국 은행감독기구 감독기능의 유효한 실시를 방해가 되지 않아야(제5차 자본요건지침 제14조 제3항) 함
- 회원국의 은행감독기구는 면허를 부여한 신용기관에 관한 사항을 EBA에 통지해야 함(제5차 자본요건지침 제20조)

4. 금융업 DX 규제 동향

-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금융업 DX 규제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암호자산 시장 규제에 관한 규칙’(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MiCA)이 있음
 - MiCA는 2023년 4월 20일 EU 의회에서 최종 승인되어 2024년부터 발효될 예정
 - 암호자산과 관련한 법규제의 구속력을 선언하고 있고, 종전에는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스테이블코인이나 유틸리티 코인 등에 대해서도 규제요건을 부과하고 있음
 - 암호자산에 대한 EU 회원국의 일관적이며 통일적 규제가 목표

□ 핀테크(FinTech) 금융 업무에 대한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 정비를 적극적으로 검토

- 2016년 발효된 ‘결제서비스 개정 지침’(The revised Payment Services Directive, PSD2)에 따르면, DX 관련 챌린저 은행 등 핀테크 기업에 관한 API 개방 및 표준화 규제를 실시한 바 있음
- 디지털 뱅크에 대한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의 면허 부여와 같은 금융업 DX 및 금융서비스의 ICT 기술활용 추진

V. 일본의 금융업 규제와 금산분리

1. 금융업 규제 일반

- 일본의 금융업 규제는 금융청이 예금취급금융기관, 증권사, 보험회사 등에 대한 일차적인 규제·감독 권한을 가지는 일원적 규제
 - 예금취급기관은 은행법(銀行法)상의 규제, 증권회사는 금융상품거래법(金融商品取引法)상의 규제, 보험회사는 보험업법(保險業法)상의 규제를 받음
- 일본법상 예금취급기관은 은행법(銀行法)에 의한 규제, 증권회사는 금융상품거래법(金融商品取引法)에 의한 규제, 보험회사는 보험업법(保險業法)에 의한 규제가 이루어짐
- 은행들은 여전히 기업 주식의 보유를 통한 물적 지배와 임원 파견과 같은 인적 지배를 통해 산업계를 지배하고 있는 실정⁴⁴⁾
 - 기업 자금조달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은행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 편
 - 버블 붕괴 이후, 부실채권 처리와 함께 은행의 조직 재편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졌음
 - 은행의 현실적인 산업지배를 일정하게 제한하기 위한 정책적 취지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채택

2. 금산분리 규제 체계

- 일본법상 ‘은행에 의한 산업자본 소유 규제’는 은행법상의 업무규제 및 독점금지법(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상의 진입·

소유규제에 근거

- 일본 은행법 제12조는 은행의 업무범위로 동법 제10조상의 고유업무·부수업무 및 동법 제11조상의 법정타업무 이외의 업무 영위를 금지
 - 일본 은행법은 1927년 제정되어, 1981년 전면 개정됨. 1927년 은행법은 구은행법으로, 1981년 은행법을 신은행법으로 불림
 - 1872년의 국립은행조례(国立銀行条例)로, 1863년 미국의 연방은행법(National Banking Acts)을 모델로 한 것으로, 은행의 조직 형태는 주식회사로 하여, 은행의 업무 범위 규제를 최초로 정하고 상공업 등과의 겸업금지를 규정⁴⁵⁾
 - 국립은행조례에 의해 은행의 조직 형태는 주식회사로서 주주총회나 이사 등의 기관설계를 포함한 지배구조 체계가 갖추어졌고, 타업무를 금지함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 조치가 구축됨
 - 1890년 국립은행조례는 은행조례(銀行条例)로 명칭이 개칭되면서, 은행의 타업무 금지 규정 등이 모두 폐지됨⁴⁶⁾
 - 그러나 은행조례의 규제완화로 인해, 은행임원에 의한 타업경영 또는 기타 겸업에 대한 대규모 용자와 같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⁴⁷⁾
 - 1927년 쇼와(昭和) 금융공황이라고 하는 전국적인 금융위기 사태가 초래. 쇼와금융공황으로 전국적인 예금인출 소동과 함께 77여 개의 보통은행이 파산. 이때부터 일본에서는 기업집단 산하의 대형 과점 은행들이 관료의 지위를 받는 형태의 경영 방식들이 나타났다고 함⁴⁸⁾
 - 금융공황을 계기로, 기존의 은행조례가 전면 재검토되어, 1927년 은행법(이하 구은행법)이 제정. 구은행법은 은행의 겸업을 대폭 제한하여, 1890년 은행조례에 의해 삭제되었던 은행의 타업 금

44) 坂東洋行, “金融事業者のガバナンスと金融規制”, 信託研究奨励金論集 第43号, 信託協会, 2022, p.55

45) 佐藤義雄, “日本最初の会社立法『国立銀行条例』— 明治初年の会社立法模索 (5)”, 産大法学 13卷 3号, 京都産業大学法学会, 1979, p.116

46) 小山嘉昭, 『銀行法精義』,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18, p.14

47) 1890년 은행조례는 발권은행이었던 국립은행을 보통은행으로 개정하였고, 정책적 이유에 따라 국립은행 이외의 다른 은행 유사회사들도 보통은행으로 인가가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식회사 이외의 은행 형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은행조례에 의해 대규모 대출 규제가 철폐됨으로써 일반 기업집단들은 일종의 사금고로서 은행을 설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업 겸업이 인가제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배경이 있었다(小山嘉昭, *op. cit.*, p.18).

48) 이에 관하여는 차명수, “1927년 쇼와 금융공황의 원인”, 경제사학 제30권, 경제사학회, 2001, pp.163-188 참조

지, 주식회사로서 은행의 조직형태, 대규모 대출 규제 등을 재도입하였음

- 이 규정들은 현행 일본 은행법까지 유지되고 있고, 특히 타업 금지를 일본에서는 '은행'과 '상업'의 분리라는 의미에서 '은상분리'(銀商分離)로 지칭⁴⁹⁾

○은행 자체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회사의 타업무도 은행법 제12조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일반 사업회사에 대한 출자도 규제대상이 됨

○은행에 의한 사업회사 주식의 보유는 독점금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5%(은행지주회사의 경우 15%)까지 가능(이른바 5% rule)

- 은행 및 은행자회사 그룹의 경우, 합산하여 5%까지로 제한

- 은행지주회사 그룹의 경우, 합산하여 15%까지로 제한

- 다만, 일정한 조건하에, 비상장 벤처기업이나 사업재생회사, 금융관련 IT기업(은행업고도화 등을 위한 회사) 등의 주식을 5%(은행지주회사는 15%)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

○은행의 산업자본 소유가 금산분리 규제의 회피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본법상 투자대상 기업은 설립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기업규모가 충분히 작아야 하며, 주식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을 상한으로 해야 할 요건 등의 제한이 따름

□ 일본법상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 소유 규제'는 특별한 규제 없음

○은행 주주로서 적격성 요건을 갖추면, 자기자본 범위 내로 보유가 제한되는 것(독점금지법 제9조) 외에는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 주식보유에 특별한 규제 없음

○2000년 8월, 금융청은 '타업종 진입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은행 건전성을 위해 사업회사로부터 경영의 독립성이 확보되는지, 사업리스크가 차단될 수 있는지 등을 심사받도록 하고 있음

○다만, 2002년에는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일반 사업회사가 은행의 주요주주로서 은행업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신 규제체계를 마련

○구체적으로 일반 사업회사는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의 20%를 초과 보유하거나, 5%를 초과 보유하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주요주주에 해당되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감독당국의 허가와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함

3. 금산분리와 은행의 업무범위 규제 현황

□ 일본 은행법상 업무범위규제의 대상은 은행, 은행의 자회사(이하 은행자회사),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이며 각 업무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음

○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는 ① 고유업무(固有業務), ② 부수업무(付隨業務), ③ 타업증권업무 등(他業証券業務等), ④ 법정타업(法定他業)의 4가지

- 고유업무(固有業務): (a) 예금 또는 정기적금 등의 수용, (b) 자금 대출 또는 어음 할인, (c) 외환거래(결제업무). 고유업무는 은행업에 해당하며,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은행면허의 취득이 필요. 면허 없이, (a)와 (b)를 병행하거나 (c)를 하는 것은 법률상 금지. (c)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은행이 독점하는 업무였으나, 2009년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의 제정에 따라, 일정한 제한 하에 외환거래를 영위할 수 있는 업종으로 자금이동업(資金移動業)이 창설

- 부수업무: 은행업에 부수되는 업무로, 일본 은행법 제10조 제2항에서 25가지 종류의 업무를 의

49) 本間晶 外, 『銀行法』,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17, p.55

미. 예를 들어, 채무보증 또는 어음인수, 유가증권매매, 국채인수, 금전채권취득 또는 양도 등

- 타업증권업무 등: 고유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업무로, 고유업무에 대한 부수적 성격은 없으나, 은행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업상의 이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들이 개별적으로 한정 열거됨⁵⁰⁾
- 법정타업(法定他業)이란 고유업무, 부수업무, 타업증권업무 등 이외에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는 업무로 은행이 영위 가능한 업무를 의미. 예컨대, 담보부사채신탁업무, 신탁업무, 보험창구판매업무, 전자채권기록업무 등이 해당

○ 은행자회사⁵¹⁾도 은행 자체에 대한 규제와 마찬가지로, 타업 참가가 법률상 금지됨

○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⁵²⁾도 일본 은행법상 업무 범위를 규제받는 회사로 타업 참가가 금지됨

- 은행지주회사는 은행법 제52조의23 제1항 각호에 한정 열거된 증권전문회사나 보험회사 등을 자회사(은행형제회사)로서 가질 수 있음
- 해당 업무범위 규제내용은 은행 자회사와 동일했으나, 2009년의 은행법 개정으로 인해,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 즉, '은행형제회사'에는 선물거래, 옵션거래, 스와프거래 등의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상품의 현물거래가 인정되어, 은행자회사의 규제 내용과는 차이가 발생⁵³⁾

〈표 5〉 은행, 은행자회사,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규제

은행	① 고유업무(일본 은행법 제10조 제1항 각호 열거) ② 부수업무(일본 은행법 제10조 제2항 각호 예시) ③ 타업증권업무(일본 은행법 제11조 각호 열거) ④ 법정타업(일본 은행법 제12조. 위 ①~③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으면 업무 가능)
은행자회사	자회사 대상회사를 한정 열거(일본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 각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 대상회사를 열거(일본 은행법 제52조의23 제1항 각호. 은행자회사에 대한 규제와 동일한 내용)

주: 저자 작성

50) 한정 열거된 업무로는 "① 금융상품거래법 제28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투자자문업무', ② 금융상품거래법 제33조 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유가증권 또는 거래에 대해 동향 각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는 업무', ③ 신탁법 제3조 제3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신탁 및 관련 사무에 관한 업무', ④ 산정할당량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체결 또는 그 중개 혹은 대리를 하는 업무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다(일본 은행법 제11조).

51) 일본 은행법상으로는 '자회사대상회사'(子会社対象会社)라 한다. 자회사 대상회사로 열거된 회사는 ① 은행, ② 장기신용은행, ②의2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상 자금이동업 및 관련 내각부령상의 자금이동전문회사, ③ 금융상품거래법상 유가증권관련업 및 관련 내각부령상의 증권전문회사, ④ 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상품중개업 및 관련 내각부령상 증권중개전문회사, ④의2 금융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상 유가증권 등 중개업무 및 관련 내각부령상의 업무, ⑤ 보험회사, ⑤의2 보험업법상 소액단기보험업, ⑥ 신탁업법상 신탁업무 등, ⑦ 은행업을 하는 외국회사, ⑧ 유가증권 관련업을 영위하는 외국회사, ⑨ 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회사, ⑩ 신탁업을 영위하는 외국회사, ⑪ 내각부령상 기타 은행의 종속업무와 금융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 ⑫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척하는 회사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회사, ⑬ 경영향상에 크게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새로운 사업활동을 실시하는 회사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회사, ⑭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한다고 인정되는 사업활동을 실시하는 회사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회사, ⑮ 정보통신기술 및 그 밖의 기술을 활용한 은행이 영위하는 은행업의 고도화나 해당 은행 이용자의 편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업무나 지역 활성화, 산업 생산성 향상 및 그 밖의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이바지하는 업무 또는 이들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 ⑯ 자회사대상회사만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 ⑰ 자회사대상회사만을 자회사로 하는 외국회사로서 지주회사와 동종의 것 또는 지주회사와 유사한 것이다(일본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 각호).

52)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를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은행의 '형제회사'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에서는 강학상 '은행형제회사'(銀行兄弟会社)라고도 부른다.

53) 松井秀征, "金融グループの業務範囲", 『金融法務事情』 64卷 15号,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16, p.20

4. 금산분리 규제 완화 동향

□ 2016년 은행법 개정

- 2016년의 은행법 개정에 의해, '은행업 고도화 등 회사(銀行業高度化等会社)가 은행자회사와 은행형제회사의 유형범위에 추가
 - '은행업 고도화 등 회사'란 정보통신기술 및 그 밖의 기술을 활용한 해당 은행이 영위하는 은행업의 고도화 또는 해당 은행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에 이바지하는 업무 또는 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 핀테크(FinTech)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
- 2016년 개정에 따라 '은행업 고도화 등 회사'에 대한 출자는 일반 사업회사에 대한 5% rule 또는 15% rule의 출자제한액을 초과하여 출자하는 것이 가능
 - IT를 이용한 금융서비스 확충이 기대

□ 2019년 은행법 개정

- 2019년의 은행법 개정에서는 은행의 부수업무에 '정보 이용 및 활용 업무(情報利活用業務)가 추가
 - '정보 이용 및 활용 업무'란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고객 정보를 해당 고객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 제공하는 업무, 그 밖에 은행이 보유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로, 해당 은행이 영위하는 은행업의 고도화 또는 해당 은행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에 이바지하는 업무를 의미.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 의한 지방기업의 경영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보 및 데이터 제공 등⁵⁴⁾
- 일본 총무성(総務省)과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이 주도하여, 2018년 하반기부터 '정보은행(情報銀行)의 상용서비스가 시작되고 있음

- 2019년 개정에 따른 은행의 '정보 이용 및 활용 업무' 역시 이러한 '정보은행'의 업무와 기본적으로는 중첩됨. 다만, 정보제공자의 동의 외에도 은행업의 고도화 또는 이용자 편의 요건이 더해진다는 점에서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고, 2019년 개정에 의해 은행 자체에서 해당 업무의 영위가 가능해짐

□ 기타 은행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

- 2018년 3월 30일, 금융청의 '주요은행 등을 위한 종합적 감독지침(主要行等向けの総合的な監督指針)이 개정되어, '인재소개(人材紹介業務)업무가 '기타 부수업무'에 포함
 - 개정 전에는 인력소개 회사와 연계한 비즈니스 매칭 등을 행하는 지방 금융기관은 있었으나, 금융기관이 인력소개업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은 법령상 불가능했음. 그러나 이 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인력소개업무가 가능해지게 되었음
- 2019년 10월 15일, 금융청은 '은행법 시행규칙(銀行法施行規則)을 개정하여, '5% rule'의 예외조치를 확대
 -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은행은 '사업재생회사(事業再生会社) 중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해 5%를 초과하여 의결권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음.
 - 이 개정에 따라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재생회사의 요건이 완화되었고, 은행이 사업재생회사의 의결권을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의 일부연장이 이루어졌음.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은행형제회사)도 같은 취지로 개정
- 2019년 10월 15일, 금융청은 '중소·지역금융기관 감독지침(中小・地域金融機関向け監督指針)을 개정하여, 은행업 고도화 등의 회사 유형에 '지역상사(地域商社)를 명시

54) 鈴木正人, "相次ぐ制度改正で拡がる銀行の業務範囲 — 本体のみならず子・孫会社を通じてより広範な業務が可能に", 『金融財政事情』71巻 1号,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20, pp.34-37

- 지역상사란 일반적으로 농산물이나 지역 특산품의 마케팅 또는 상업적 유통 확보 등을 생산업자를 대신해 실행해 주는 사업자를 의미하는 바, 지역은행 성장의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상사가 업무범위에 포함된 것

□ 2021년 은행법 개정

- 2021년 개정에 의해 은행의 부수업무에 '은행업의 경영자원 활용에 기반한 디지털화 또는 지방재생 등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업무'(銀行業の経営資源を活用して営むデジタル化や地方創生など持続可能な社会の構築に資する業務)가 추가하여 부수업무의 범위를 확대

- 예를 들어, 은행의 애플리케이션, IT시스템 판매, 데이터 분석·마케팅·광고, 등록형 인재파견, 컨설팅·매칭 등이 이러한 부수업무로 인정될 수 있음

- 2021년 개정에 의해 은행업 고도화 등 회사에 대한 업무 확대가 이루어짐

- '은행업 고도화 등 회사'는 2016년의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자회사·은행형제회사 유형에 추가된 바 있음. 다만, '은행업 고도화 등 회사'업무에 대한 개별적인 열거가 없어, 사실상 핀테크나 지역상사로 한정된다고 해석되어 왔었음.⁵⁵⁾ 2021년 개정에서도 개별적 열거는 없는 체제임
- 2021년 개정에서는 '은행업 고도화 등 회사'의 업무 범위에 '지역 활성화, 산업 생산성 향상 및 기타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업무'(地域の活性化, 産業の生産性の向上その他の持続可能な社会の構築に資する業務)가 추가되어, '일정한 고도화 등 업무'(一定の高度化等業務)만을 실시하는 은행업 고도화 등 회사라는 새로운 체계가 마련되어 인가 기준이 완화.
- 개정 전에는 은행 및 은행 그룹이 은행업 고도화

등 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경우의 인가(타업인가) 심사는 통상적인 은행자회사·은행형제회사 보유와 관련한 인가(통상인가) 심사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음. 2021년 개정에 의해 은행·은행 그룹은 '일정한 고도화 등 업무'만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통상인가'만을 받아 자회사로 하는 것이 가능해졌음

- '일정한 고도화 등 업무'에는 핀테크, 지역상사, 은행애플리케이션, IT시스템 판매, 데이터 분석·마케팅·광고, 등록형 인재파견, ATM 유지보수 점검, 장애인고용촉진법상 특례 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지역과 연계한 성년후견업무 등이 인정되고 있음⁵⁶⁾

- 2021년 개정에 따라 출자규제가 완화됨

- 기존에는 지역활성화 사업회사에 대한 출자가 의결권의 최대 50%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2021년 개정에서는 은행이 출자를 통해 지역의 광범위한 희생 등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비상장 지역활성화 사업회사'(非上場の地域活性化事業会社)에 대해 의결권의 100% 출자가 가능해졌음.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요식업체와 숙박업체 등에 대한 출자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

- 2021년 개정에서는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외국자회사·외국형제회사와 관련한 규제가 완화됨

- 기존에는 일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회사의 경우, 은행의 인수 자체는 가능했으나,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일반사업을 겸영하는 외국리스회사·대부업체는 기본적으로 인수가 불가능했음
- 2021년 개정으로, 인수 후 10년 동안 업무범위 규제에 관계없이 은행·은행그룹은 이들 회사들을 자회사로 할 수 있게 되었고, 현지에서의 경쟁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 후 자회사 인수가 가능해졌음

55) 三宅恒治, 「「受動的」から「能動的」対応への転換を—改正銀行法の活用が課題解決の鍵に」, 『月刊金融ジャーナル』62巻 5号, 金融ジャーナル社, 2021, p.86

56) 家森信善, 「業務範囲規制の緩和を生かして顧客支援の充実を—事業性評価の能力が成否を決める」, 『銀行実務』51巻 8号, 銀行研修社, 2021, pp.13-14

〈표 6〉 일본법상 금산분리 규제완화 변화 추이

개정 법령	은행	은행자회사 및 은행형제회사	출자규제 등
2016년 5월 은행법 개정		은행업 고도화 등 회사를 은행자회사·은행형제회사의 유형에 추가	
2018년 3월 감독지침 개정	'인재소개업무'가 '기타 부수업무'에 포함되도록 명시		
2019년 5월 은행법 개정	부수업무에 '정보이용·활용업무'를 추가		
2019년 10월 은행법시행규칙 개정			5% rule의 예외조치 확대
2019년 10월 감독지침 개정		'은행업고도화 등 회사'의 유형에 '지역상사'를 명시	
2021년 5월 은행법 개정	부수업무에 '은행업의 경영자원을 활용해 영위하는 디지털화 또는 지방재생 등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	- 은행업고도화 등 회사에 '지역 활성화, 산업 생산성 향상 및 기타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업무'(은행업고도화 등 업무)를 추가 - 외국자회사·외국형제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	비상장 지역활성화 사업회사에 대해 의결권 100%의 출자 가가 가능한 것으로 출자규제를 완화

주: 저자 작성

VI. 우리나라 금산분리 규제에 관한 시사점

1. 금산분리 규제 체계

- 우리나라는 1982년 동일인의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 8% 초과 소유 및 사실상의 지배를 금지한 ‘은행법’ 개정을 통해 금산분리가 제도화된 이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에서 금산분리 관련 규제를 구체화하고 있음
- ‘은행에 의한 산업자본 소유 규제’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업무규제 및 진입·소유규제에 근거
 - 은행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은행법 제37조)
 - 보험회사도 비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5%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보험업법 제109조)
 - 은행지주회사는 5% 이내에서 사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가 가능하지만,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비금융회사의 주식 취득이 불가능(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및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도 제한되어,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20% 이상 또는 5% 이상을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의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하려고 할 때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 소유 규제’는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상의 진입·소유규제에 근거
 - 산업자본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⁵⁷⁾는 은행 주식의 4%(지방은행은 15%, 인터넷전문은행은 3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은행 주식의 10%까지 보유가 가능(은행법 제16조의2,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도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4%(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 15%)를 초과 보유할 수 없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초과보유가 가능(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
 - 사모투자펀드를 이용한 산업자본이 은행을 우회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비금융주력자가 사모투자펀드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출자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4%~10%를 보유하며 최대주주이거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등에는 이를 은행법상의 비금융주력자로 간주하여 은행소유에 제한을 두고 있음(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16)

57) 은행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비금융주력자”란 ① 동일인 중 비금융주력자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이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25%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 ② 동일인 중 비금융주력자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로서 상기 ①에서 ②의 자가 그 발행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의 그 투자회사, ④ 자본시장법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⑤ 상기 ①에서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경우, ⑥ 상기 ①에서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⑦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가 취득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의 합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30% 이상인 경우, ⑧ 상기 ③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4% 초과하여 취득·보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목적회사를 말한다.

〈표 7〉 국내외 금산분리 체계 비교

구분	은행에 의한 산업자본 소유 규제 (지분취득)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 소유 규제 (지분취득)
미국	5% 이상 소유 불허	불허 (비지배조건으로 25%까지 허용)
영국	소유 허용	소유 허용
EU	소유 허용	소유 허용
일본	소유 허용	소유 허용
한국	15% 이상 소유 불허	4% 이상 소유 불허

2. 금산분리와 은행의 업무범위 규제 현황

□ 은행법상 은행의 업무 범위는 고유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로 구분되고 있음

○ 고유업무는 인가를 받은 은행만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로서 예금 업무 및 대출업무를 의미

- 은행법상 고유업무의 범위는 ①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②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③ 내국환·외국환⁵⁸⁾이 해당(은행법 제27조)

○ 부수업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은행이 별도의 인가를 받아 영위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은행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를 의미

- 은행법상 부수업무의 범위는 ①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업무, ② 상호부금 업무, ③ 팩토링 업무(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④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⑤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 ⑥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업무, ⑦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업무, ⑧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업무, ⑨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 업무, ⑩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 업무, ⑪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 업무, ⑫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등의 판매 대행 업무, ⑬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업무, ⑭ 기타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하고, 예금자 등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없어야 하며,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임(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 그 밖에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하여 “은행업무에 부수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은행법 제27조의2 제5항)

○ 겸영업무는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 은행법상 3가지 유형의 업무를 정하고 있음

- 은행법상 겸영업무의 범위로는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인가·허가 및 등록 등을 받아야 하는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관련 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 ③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가 해당(은행법 제28조)

3. 금산분리 규제의 한계

□ 금산분리 규제는 금산분리 규제는 기본적으로 ① 은행 본업에 대한 효율 증진, ② 타업 겸영으로 인한 위험 배제, ③ 이해상충 방지, ④ 우월적 지위의 남용 금지와 같은 이유에서 정책적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음

58) 내·외국환 업무가 은행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은행법상으로는 예금 및 대출 업무인 “은행업” 인가를 받은 은행은 내국환 외국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는 해석이 된다. 그런데 내국환 외국환 업무는 인가를 받아야 하는 은행업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도 해당 관련법에서 내국환 외국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면 내 외국환 업무의 영위가 가능하게 되어, 은행의 고유업무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동원, “주요국 은행의 업무 범위 현황과 국내 법·제도적 시사점”, 정책연구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15, p.65).

- 은행은 면허 업종으로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본업 전념 의무가 있고 이러한 점에서 은행 본업에 대한 효율 증진의 필요성이 있음
- 타업겸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란 은행이 타업을 겸영하는 경우, 타업의 경영악화가 본업의 경영기반을 위협함으로써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금리스크를 의미
 - 타업 겸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은행 고유업무의 건전성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은행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저하를 막고, 예금자·거래자의 자산 손실 사태를 피하기 위한
- 이해상충거래란 은행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이 경합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는 거래임
 - 예컨대, 은행이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악화된 상황을 파악한 후, 대출자에게 회사채를 발행하도록 하고 스스로 그 회사채를 인수하여,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 뒤 판매대금을 대출 상환에 충당하도록 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
- 우월적 지위 남용이란 은행의 강력한 금융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
 - 근거가 불명확한 대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필요액 이상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
 - 예컨대, 은행 고객이 자본시장에서 유가증권에 의한 자금조달을 시도할 때, 은행의 관련 회사가 되는 증권회사를 인수회사로 하지 않으면, 대출채권의 변제를 강요하거나 고객이 의도하지 않은 투자신탁의 구입을 대출 조건으로 하거나, 고객이 요구하지 않는 금리스와프 등의 파생상품이 포함된 대출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음⁵⁹⁾
- 그러나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금융 생태계가 디지털 전환 확산에 따른 빅블러 현상의 전개로 전통적인 은행의 업무범위 규제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기존 업무환경에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을 적용하거나 스마트워크(smart work) 환경으로 전환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이른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이 확산되고 있음
- 디지털전환(DX)은 비금융 분야에서 먼저 시작되었다는 특징이 있지만, Covid-19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 거래 요구가 높아지면서, 금융 분야에 있어서도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 오늘날의 사회적·경제적 배경의 변화는 금융정책의 수정, 특히 금산분리 규제가 가진 실질적인 문제점들이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고, 이는 금산분리 규제 한계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전환(DX)의 확산에 따라 ‘은행 - 산업’ 간 경쟁구조상의 불균형이 발생
- DX 확산에 따라 가장 큰 변화를 겪는 분화는 바로 금융 분야라 할 수 있고, 이를 통한 빅블러 현상의 가속화되고 있음. 다만 빅블러 현상의 이면에는 크게 소비 행태, 정책 및 기술의 변화가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음
 - 디지털 시대에서는 고객과의 관계나 고객만족, 고객가치의 향상 등 고객을 중심에 둔 마케팅의 중요성 또한 고도로 중요해지기 때문임.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서는 스마트폰이 불러온 플랫폼 기반의 금융 비즈니스 경쟁을 꼽을 수 있음
 - 현재 금융업계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핀테크 내지는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플랫폼 기반의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에 있음

59) 坂東洋行, “日米における金融・資本市場規制改革とファイアーウォール規制緩和の一考察”, 『早稲田法学会誌』 60巻 1号 (早稲田大学法学会, 2009), pp.407-408

○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법률상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에 은행은 법률상 비금융업 수행이 불가능함

- 은행은 은행 내부나 자회사를 통해 금융업과 금융 유관업무(데이터 제공)만을 영위할 수 있음. 부수 업무 범위가 확대와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의 도입 등으로 일부 비금융업무가 수행가능하기는 하나, 제조, 유통, 통신과 같은 일반적인 비금융 분야는 사업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임

- 반면에 빅테크 기업들은 은행을 포함한 금융업에 자유롭게 진출 가능함. 전자금융법 제정과 오픈뱅킹의 시행 등으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⁶⁰⁾

○ 결국 금산분리에 관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은행은 고객 확보에서 금융상품 제조로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⁶¹⁾

- 국내 은행권에서는 현행 금산분리 규제 체계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함⁶²⁾

□ 금산분리의 엄격한 규제에 의한 지방활성화 정책의 제약

○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진입이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경제성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음

- 현재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인구감소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 도시권 이외의 지역경제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를 앓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 또는 일본과 같은 인구급감 국가들의 경우,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문제에 봉착해 있고, 모두 지방경제 활성화를 국가중점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실정임

- 이미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함께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과밀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매우 기형적인 경제구조가 형성되고 있음

-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는 앞으로 지방경제 쇠퇴 또는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존립 위기라는 생존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큼

○ 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가용 자원들이 투입되어야 할 것인데, 지방은행들의 적극적인 역할은 이러한 과정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음

- 결국 향후의 ‘지방재생’을 어떻게 성공시키느냐에 따라 국가의 생존이 달려 있음

○ 그러나 현행 법률상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지방은행들의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또는 가치 창출을 위한 경제 역할들이 모두 막혀 있는 상황임

〈표 08〉 국내외 은행-산업 간 상호 진입 여부 비교

구분	산업 → 은행 진출	은행 → 산업 진출
미국	불허	불허
영국	허용	허용
EU	허용	허용
일본	허용	불허 → 2016년 이후 완화
한국	불허 → 허용	불허

자료: 김혜미, “빅블러(Big Blur) 시대와 은행의 업무 범위”,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제12권 26호, 2022, 4면

60) 류창원, “금융-비금융 융복합 서비스와 금산분리 규제 완화”, 『아시아타임즈』 ABC 2023 포럼, 2023. 5., p.26

61) 최준선, “금융 ‘진입·칸막이’ 규제 혁파 급하다”, 문화일보 2023. 8. 29.자 칼럼,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90868>> (2023. 8. 30. 최종검색)

62) 김도형·박민우, “기울어진 운동장에 갇힌 금융혁신… 빅테크와의 차별 해소 시급”, 동아일보 2022. 11. 10.자 기사,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1110/116420618/1>> (2023. 7. 30. 최종검색) 참조

□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는 DX시대 은행의 새로운 역할 창출을 저해하고 있음

○ DX 확대를 통해 금융트렌드가 변화하며 그에 따른 은행 역할의 수정이 필요

-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적극적인 역할 창출이 쉽지 않음

- 지금까지는 금융의 경제적 기능은 자산보관, 위험분산, 자금중개, 지급결제에 있었으나, 향후에는 여기에 사회적 가치 창출과 혁신성장 마중물, 노후소득 증대라는 역할들이 요구되고 있음

○ 우리나라 현행 은행법상으로는 은행의 비금융업 영위가 막혀 있으므로 디지털 시대에서 은행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이 불가능함

4. 금산분리 완화와 기대효과

□ 금산분리 규제는 제도적 이념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직면한 빅블러 시대에 은행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현재 저성장·고령화 진입이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경제성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음

- 금융산업 역시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기조가 계속 될 경우,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우리나라 금산분리 규제 체계의 점진적인 재설계 논의가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금산분리의 완화를 통한 금산융합(은산융합)의 필요성과 그 기대 효과들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은행과 일반 사업회사(특히, 핀테크 기업)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 업무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상 은행의 자회사 출자가 가능 업종 범위를 확대해야 함. 구체적으로 자회사 업무 규제 경우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금융업무를 자회사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법상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참조할 입법례로는 일본이 대표적임. 일본은 미국과는 달리,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대해 주요 주주 규제 이외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즉, 일본에서는 핀테크 기업, 소매상, 통신업체, 인터넷 사업자 등 다양한 업종의 산업자본들이 은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 물론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일본에서도 업무범위 규제가 부과되고 있고 사업회사에 대한 의결권 보유 규제도 동시에 부과되고 있음

- 그러나 은행의 비금융업 영위를 위해 2016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업 고도화 등 회사를 은행자회사·은행형제회사의 유형에 추가하였음

- 실무적으로 신규업무는 핀테크 관련 업무나 지역상사 업무에 그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일본법상의 은산분리 규제 역시 사업회사와 은행 간의 불공정성 때문에 '일방통행' 방식의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 결국 2021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에 '은행업고도화등 업무'를 추가하고, 은행자회사 및 은행형제회사의 유형 중, '은행업고도화등 회사'의 업무범위에 '은행업고도화 등 업무'를 추가하여, 은행들의 재량에 따른 보다 넓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업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부문 진출이 가능해졌으나, 은행은 자회사·부수업무 규제로 비금융부문 진출이 어려운 상황임

- 그동안 비금융업과 금융업에 활발하게 진출하는 핀테크 업계와 달리, 은행은 법에 가로막혀 비금융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황에 놓여 있음

○ 결국 우리나라 은행법도 산업자본과 은행자본 간의 '동등 지위'(equal footing) 확보라는 관점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같이, 은행의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 수행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의 업무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금융위원회에서는 입법개선 방안으로 제1안으로 '포지티브 리스트 확대' 방안⁶³⁾, 제2안으로 '네거티브 전환 + 위험총량 규제' 방안⁶⁴⁾, 제3안으로 '자회사 출자는 네거티브화 + 부수업무는 포지티브 확대' 방안⁶⁵⁾을 제시한 바 있음⁶⁶⁾

□ 둘째,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재생 및 지방활성화 정책을 견인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고령화 진입이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경제성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음
 - 금융산업 역시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기조가 계속될 경우,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인구 고령화는 대체로 지방인구의 고령화가 주원인이 되고 있고,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 현상에서 비롯되고 있음
- 지방소멸에 따른 국가경제의 불균형 문제는 향후 국가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임
 -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한 잠재적인 성장 동력 정책이 필요함
- 그러나 현행 은행법상으로는 금산분리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지방은행들의 사업 다각화나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있음

○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은행을 육성함으로써 지방재생정책을 견인해야 함

- 일본은 은행법상 금산분리 규정을 완화하여, 지방은행들이 재생에너지사업 등의 일반 사업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지역 경제활성화에 상당한 경제효과를 일으켰음⁶⁷⁾
- 예를 들어, 2022년 나가노현의 하치주니은행(八十二銀行)은 재생에너지발전 완전자회사를 설립한 바 있고, 니가타현의 제4호쿠에츠은행(第四北越銀行)은 현지기업들과 공동출자로 지역에너지회사 등을 설립한 바 있음
- 규슈 지방의 오이타은행(大分銀行)은 지역상사 자회사를 설립하여, 지역특산물 판로 개척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지역상사를 설립하여 은행거래 기업의 편익을 향상시키는 한편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 이러한 지방은행들의 비금융사업 진출은 지역내 고용창출 또는 부품제조 등 협력업체 매출 증대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⁶⁸⁾
- 궁극적으로는 현행법상 디지털 시대에서 은행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비금융업 영위가 필요함

□ 셋째, 금산분리의 완화를 통해 디지털 시대 새로운 은행의 기능적 역할을 창출해야 함

63) 제1안은 현행과 같이 부수업무, 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업종을 열거(positive 방식)하되, 기존에 허용된 업종(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등)외에도 디지털 전환 관련 신규업종, 금융의 사회적 기여와 관련된 업종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감독규정 개정 및 유권해석으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고,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새로운 업종 추가에 규정 개정, 유권해석 등의 별도조치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법령의 위임 범위 내 인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64) 제2안은 상품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되, 위험총량 한도(자회사 출자한도 등)를 설정하여 비금융업 리스크를 통제하는 방안이다. 이는 새로운 업종이 출현하더라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하고 금융회사가 다양한 비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본업 관련성이 낮은 비금융업 영위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관리 부담이 증가하거나 금융부문에 전이될 위험성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65) 제3안은 자회사 출자와 부수업무를 분리하여 자회사 출자는 제2안에 따라, 부수업무는 제1안을 따르는 방식이다. 금융회사 본체와 자회사를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과 리스크 수준에 맞게 규제를 설계할 수 있고, 금융회사 본체가 직접 수행하는 부수업무는 보수적으로 확대하여 리스크와 이해상충 우려를 경감하고, 자회사 출자는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자회사 출자 관련 네거티브화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여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자회사를 통한 다양한 비금융업 수행에 따른 리스크 관리 부담 증가, 이해관계자간 갈등 소지 등이 있다.

66) 금융위원회, op.cit., pp.2-3

67) 이에 관하여는 内野逸勢, "金融DXで明らかになる有望な金融ビジネスモデル: 問われる稼ぐ力の強化との整合性", DIR research quarterly review, Vol. 46, 2022, pp.52-73 참조

68) 中村中, 地域が活性化化する地方創生SDGs戦略と銀行のビジネスモデル, ビジネス教育出版社, 2020, p.45

○ DX 확대에 따라, 최근 전 세계 유수의 은행들은 고전적인 은행업 기능에서 탈피하여 혁신성장을 위한 새로운 역할 창조를 도모하고 있음⁶⁹⁾

- 싱가포르의 DBS(Development Bank of Singapore Limited) 은행은 주택, 여행, 자동차, 유틸리티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외부 사업자와 파트너십을 통해 종합적인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고객 확보 및 차별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음⁷⁰⁾

- 일본의 경우, 은행법 개정에 따라 은행 부수업무로 사업자 소개, 고객방문 서비스 등이 허용되자, 히로시마은행(広島銀行)은 은행고객에게 이사, 가사대행, 집수리, 성묘, 방역, 부동산 등 생활영역 업체를 소개하거나 고령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생활파트너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일본의 SMBC(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는 자회사 Sustana를 설립하여, 기업의 온실효과가스(GHG) 배출량 측정 등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산정된 배출량을 시각화하고 이를 기업의 ESG 공시에 활용하도록 한다. 나아가 해당 데이터를 기초로 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⁷¹⁾

□ 경쟁 환경의 변화는 리스크의 변화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그에 맞는 새로운 법적 규제와 틀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 첨단 AI 금융기법의 등장, 디지털전환의 확산, 빅블러 현상의 전개에 따른 현대 금융서비스 산업을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체제여야 함

○ 새로운 경쟁요소와 변화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향후 점진적이며 효율적인 금산융합 정비방안에 대한 재설계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됨

69) 遠藤正之, “金融DXの現状と課題”, 信用金庫, Vol. 77, No. 1, 2023, p.22

70) 싱가포르 DBS 은행은 1968년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싱가포르개발은행’(Development Bank of Singapore)으로 설립되었다. 이것이 2003년 DBS Bank로 은행명이 변경되었다. 세계적인 금융전문지 The Banker는 2018년 세계 베스트뱅크로 DBS 은행을 선정했으며, Euromoney는 2019년에, Global Finance는 2020년에 DBS 은행을 세계 베스트뱅크로 선정하였다. 한편 2019년 9월, Harvard Business Review에서는 ‘지난 10년 간 비즈니스 모델 전환에 성공한 세계 기업 20개사’(The Top 20 Business Transformations of the Last Decade)를 발표했다. 1위는 DVD 렌탈에서 오리지널 동영상 전송으로 주력 사업을 전환한 Netflix, 2위는 소프트웨어 패키지 판매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구독 제공으로 변화에 성공한 Adobe가 랭크되었다. 3위는 Amazon, 4위는 중국의 Tencent, 5위는 Microsoft 등 빅테크 기업들이 줄지어 랭크되었다. 이 순위에서 은행으로서는 유일하게 싱가포르의 DBS 은행이 10위에 올랐다(山田能伸, 『海外に学ぶ:ポストコロナの銀行モデル』, きんざい, 2021, pp.46-48).

71) 平木恭一, 改革・改善のための戦略デザイン: 金融業DX, 秀和システム, 2022, pp.78-79

〈참고문헌〉

- 고동원, “주요국 은행의 업무 범위 현황과 국내 법·제도 적 시사점”, 정책연구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15.
- 김동환, 『저성장·디지털 시대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과 규제』, KIF연구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2021.
- 김혜미, “빅블러(Big Blur) 시대와 은행의 업무 범위”,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제12권 26호, 하나 금융경영연구소, 2022.
- 류창원, “금융·비금융 융복합 서비스와 금산분리 규제 완화”, 『아시아타임즈』 ABC 2023 포럼, 2023. 5.
- 박철호·윤창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 금산분리 완화 문제를 중심으로”, 『법과정책연구』 제18권 제4호, 한국법정책학회, 2018.
- 배준석,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법 등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금융법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금융법학회, 2016.
- 서정호, 이병윤, 『한국 금융산업의 2030 비전과 과제 : 은행 - 코로나 위기 이후 금융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원, 2020.
- 송옥렬,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의 재검토”, 『경제법연구』 제20권 제3호, 한국경제법학회, 2021.
- 이태규, “은행민영화와 소유규제 개선”, 『금융연구』 제20권, 한국금융연구원, 2006, pp.41-74.
- 차명수, “1927년 쇼와 금융공황의 원인”, 『경제사학』 제30권, 경제사학회, 2001, pp.163-188.
- 최준선, 『회사법』, 제18판, 삼영사, 2023.
- 家森信善, “業務範囲規制の緩和を生かして顧客支援の充実を一事業性評価の能力が成否を決める”, 『銀行実務』 51卷 8号, 銀行研修社, 2021, pp. 12-17.
- 小山嘉昭, 『銀行法精義』,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18.
- 佐藤義雄, “日本最初の会社立法 『国立銀行条例』 — 明治初年の会社立法摸索 (5)”, 産大法学 13卷 3号, 京都産業大学法学会, 1979, pp. 114-135.
- 遠藤正之, “金融DXの現状と課題”, 信用金庫, Vol. 77, No. 1, 2023, pp. 22-27.
- 經濟産業省, “DXを促進するためのデジタルガバナンスに関する調査研究とりまとめ報告書”, 經濟産業省, 2020, pp. 3-5.
- 鈴木正人, “相次ぐ制度改正で広がる銀行の業務範囲 — 本体のみならず子・孫会社を通じてより広範な業務が可能に”, 『金融財政事情』 71卷 1号,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20, pp. 34-37.
- 本間晶 外, 『銀行法』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17).
- 坂東洋行, “金融事業者のガバナンスと金融規制”, 信託研究奨励金論集 第43号, 信託協会, 2022, pp. 52-121.
- 坂東洋行, “日米における金融・資本市場規制改革とファイアーウォール規制緩和の一考察”, 『早稲田法学会誌』 60卷 1号, 早稲田大学法学会, 2009, pp. 381-435.
- 三宅恒治, “「受動的」から「能動的」対応への転換を一改正銀行法の活用が課題解決の鍵に”, 『月刊金融ジャーナル』 62卷 5号, 金融ジャーナル社, 2021, pp. 84-87.
- 内野逸勢, “金融DXで明らかになる有望な金融ビジネスモデル : 問われる稼ぐ力の強化との整合性”, DIR research quarterly review, Vol. 46, 2022, pp. 52-73.
- 中村中, 『地域が活性化する地方創生SDGs戦略と銀行のビジネスモデル』, ビジネス教育出版社, 2020, p. 45.
- 山田能伸, 『海外に学ぶポストコロナの銀行モデル』, きんぎい, 2021, pp. 26-87.
- Baradaran, Mehrsa, “Reconsidering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The George Washington Law Review*, Vol. 80, Issue 2, 2012, pp. 385-441.
- Carnell, Richard S., Jonathan R. Macey, and Geoffrey P. Miller, *The Law of Financial Institutions*, 5th ed., Wolters Kluwer, 2013, p. 15.
- Chartrand, Sabrina, “The OCC’s Step Towards Innovation: *The Fintech Charter*,” *Review of Banking & Financial Law*, Vol. 38, No. 511, 2019, pp. 511-524.
-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Industrial Loan Corporations: Recent Asset Growth and Commercial Interest Highlight Differences in Regulatory Authority,” *GAO-05-621*, September 22, 2005, p. 19.
- Kaplan, Lawrence D., et al., “The OCC’s Proposed

-
- Fintech Charter: If It Walks Like a Bank and Quacks Like a Bank, It's a Bank," *Banking Law Journal*, Vol. 134, Issue 4, 2017, pp. 192-207.
- Murphy, J. P., "More Sense than Money: National Charter Option for FinTech Firms is the Right Choice," *North Carolina Journal of Law & Technology*, Vol. 18, Issue 5, 2017, pp. 360-408.
- Omarova, Saule T., "The Merchants of Wall Street: Banking, Commerce, and Commodities," *Minnesota Law Review*, Vol. 98, Issue 1, 2013, pp. 265-355.
- Upton, Elizabeth J., "Chartering Fintech: The OCC's Newest Nonbank Proposal," *The George Washington Law Review*, Vol. 86, Issue 5, 2018, pp. 1392-1437.
- FDIC, "The FDIC's Supervision of Industrial Loan Companies: A Historical Perspective," *Supervisory Insights*, Vol. 1, 2004, pp. 5-13.

keri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일 2023년 12월 26일 | 발행인 김병준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6층

